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자동차부품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연장] 공고

대구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노후화 및 고위험 작업장의 후생시설 환경개선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2025년도 「자동차부품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14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목적

- 대구시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기업의 노후화·고위험 작업장 및 후생 시설 환경개선지원으로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명: 자동차부품 근로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대구지역 자동차부품 (2차, 3차) 협력사 등
※ 자동차부품 산업분류코드 불임파일 참조(업종코드 목록표)
- 공사기간: “2025년 5월 ~ 2025년 11월” 까지

○ 지원내용

- 규모: 예산소진 시까지
- 분야: 근로환경개선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 개보수
- 지원금액: 근로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 지원(최대 1,500만원)

분야	지원내용	지원금액
후생시설 환경개선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화장실, 휴게시설 보수공사 등	최대 1,500만원 지원 (기업 자부담금 10% 필수) (VAT 자부담)
작업장 환경개선	작업장 안전관련 시설 보수공사 등	

- ※ 환경개선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공사비용이 아닌 예산(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장비 구입 및 임차료, 소모품 구입 등) 지원불가
- ※ 자산으로 등록되는 시설 및 장비 지원불가

3

필수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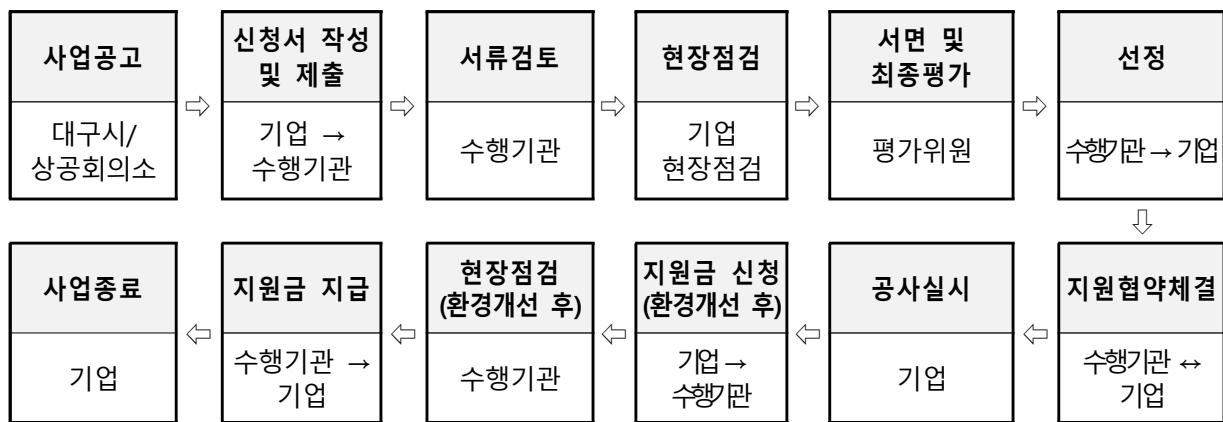
○ 조건: 사업 협약일 기준 ~ (1명 이상 신규채용)

- ※ 정규직 채용 필수 : 계약직,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제외

4

추진일정 및 평가방법

○ 추진일정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상황에 따라 평가절차 및 선정방법은 변동 될 수 있음.

- 1차(서류검토): 기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 2차(현장점검): 사업장 공사예정현장 방문을 통한 제출서류 내용 확인
※ 신청기업은 현장점검에 협조하고, 현장점검을 거부할 경우 탈락 처리함.
- 3차(서면 및 최종평가): 1, 2차 서류 검토와 분야 전문가를 통하여 심사평가

○ 선정우대기업(3년 이내)

- 대구 고용친화기업, 스타벤처기업, Pre-스타기업,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글로벌 IP스타 기업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7. 14.(월) ~ 예산소진시까지

※ 예산소진 시까지,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E-Mail 접수 / dei3273@nate.com

※ 제출서류는 제출 시 [붙임1 제출서류 목록표] 순서대로 정리 필수

○ 문의처 :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창출팀

(Tel. 053-252-3273, 053-252-3274)

6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① 소비 · 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부동산업 등 제외
- ②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무허가 건물, 불법 증축 및 개축 건물에 시공하는 경우
- ③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 ④ 건설공사현장 등 계절적,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 ⑤ 신청기업과 공사시공업체가 직 ·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
(예: 기업, 기업대표, 임원, 회사 가족 등이 공사업체 관계자인 경우)
- ⑥ 협약 체결 전 공사를 착공한 경우 또는 공사비 확보가 불가능한 기업
- ⑦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⑧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 ⑨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 ⑩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기업
- ⑪ 최근 2년 내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 ⑫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유의사항

- 환경개선 장소는 대구지역만 가능
※ 대구시 소재의 본사 및 공장(생산시설) 가능
- 공사업체 선정 및 감독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수행기관(대구상공회의소)에서 수시 및 불시 점검 실시

☞ 공사업체 선정

- 대구지역 내 소재(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공사 관련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
-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공사 면허를 소지한 기업 선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실내건축업, 소방공사업, 전기공사업 등
- 민법상 사업주와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업체에 공사 위탁 시 지원 불가

☞ 공사 관련 유의사항

- 공사기간 내 공사완료가 가능한 기업
- 공사착공 전 수혜기업과 시공업체 간 공사계약서 제출
-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수행기관에서 공사 관련 보완사항을 기업에 통보할 경우 기업에서는 반드시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 진행

- E-mail 접수 선착순으로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사업비, 공사업체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업수행기관(대구상공회의소)에 사전 문의 후 절차 진행
- 선정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공사완료 시 기업이 공사업체에게 공사비용을 선(先) 지급 후 관련 서류 구비하여 수행기관(대구상공회의소)에 사후청구
- 지원조건 및 증빙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지원금 지급
- 선정기업이 신청서상 허위내용 기재 혹은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협약취소, 지원금 환수, 향후 사업참여 배제 대상임을 속지

- 붙임 1. 제출서류 목록표
- 붙임 2. 작성서식(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업/근로자 확약서)
- 붙임 3. 설계도면 예시
- 붙임 4. 자동차부품 산업관련 분류코드